

**300-5-116. 신문조서(李裁裕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) 5**

■ 이재유를 중심으로 고병택·김용금·박기석·최호극·서구원·민태복·한봉식·민영현·이선우·오원길·최호능·박임선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신문내용 등 편철 수록

- 이재유·변우식·서규원 11회, 고병택 7회, 양성기 4회, 민태복 3회, 민영현 2회, 이선우 2회, 오원길 2회, 최호능 2회, 박임선 3회 등 3월 초부터 3월 하순까지 이재유를 비롯한 최호극·변우식 등 한국의 공산주의 사회실현을 위한 회합과 조직 운동 등 그들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 신문조서와 이재유 등의 증인으로 최영규 외 3명, 최호극에 대한 증인으로 이한수 외 5명, 오원길 증인으로 1명, 변우식·양성기·최호극·박기석·오원길·서구원 등에 대한 증인조서, 그리고 이들의 본적지조회, 김창국·김문현 등의 소행조서로 편철되었다.
- 특히 이재유는 1937년 3월 2일 제12회 신문조서를 비롯하여 3월 20일 14회, 그리고 증인 최영규·윤진룡·이한수 등의 증언과 고병택의 3월 1일 4회, 최호극·박임선에 대한 5회(3.10)·6회(3.12), 박기석에 대한 신문(3.13) 등 이재유 14회, 최호극 11회, 변우식 3회, 양성기·박기석·박임선과 그들의 증인으로 각 한 명씩, 그들을 송치하기 위한 신문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.
- 그들의 신문조서에 따라 이재유·변우식·서구원·최호극·양성기·고병택·민태복 등 7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었다.